

의안번호	제 235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0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15. 7. 1.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일부개정조례로 부서 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획관리실장을 행정국장으로 개정(안 제6조, 제7조)
- 정보화담당관을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보화담당관”을 “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가정보화기본법

제11조(정보화책임관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"정보화책임관"이라 한다)을 임명할 수 있다.

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<개정 2010.2.4., 2013.5.22.>

1.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, 지원 및 평가
2.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·계획 등과의 연계·조정
3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4. 정보자원의 획득·배분·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방안의 수립
5.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
- 5의2.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
6.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(이하 "정보기술아키텍처"라 한다)의 도입·활용
7. 정보화 교육
8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

제12조(정보화책임관 협의회)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 <개정 2013.5.22.>

1.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
3.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
4.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
5. 여러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, 지역정보화사업, 정보문화 창달,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·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협의회의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

- 제12조(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)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,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1명을 지명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-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신설 2013.3.23.>
- ③ 협의회의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□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

제6조(정보화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
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·점검
3.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1. 12. 30>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
2. 기획관리실장, 경제통상국장, 균형건설국장
3.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,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 <개정 2011. 12. 30>

1. 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

2. 정보화 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·조정
 3. 정보자원의 획득·배분·이용 등의 종합·조정 및 체계적 관리
 4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 5.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
 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활용
 7.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-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